

## 상담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2. 6.21  
개정 2014.11. 2  
개정 2017.10.25  
전부개정 2021.1.20

제1조(운영 목적) ① 상담센터는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구성원들을 위한 학내 지원 체제의 일환으로서 설립된 전문 기관이며, 교내 심리상담 업무를 주관한다. (개정: 2021.1.20)

② 상담센터는 상담을 받는 자(이하 “내담자”라 한다)의 학업 수행 및 대학생활 적응 향상, 직무 수행 향상, 정신건강 증진 및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.

제2조(업무) ① 상담센터는 제1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개정: 2021.1.20)

가. 심리상담 서비스(심리상담 및 심리검사)

나. 교육

다. 연구 및 자문

라. 유관기관 업무 협조

② 심리상담 서비스는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요구할 때 시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사경고 지원상담은 의무 상담으로 실시한다.(개정: 2021.1.20)

③ 제1항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담센터 운영세칙에 따른다.(개정: 2021.1.20)

제3조(조직) ① 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장, 상담(연구)교수, 전임상담원, 객원상담원, 행정원을 둘 수 있다.(개정: 2021.1.20)

1.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, 센터를 대표하며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.

2. 상담(연구)교수는 상담 및 임상심리 분야 박사학위와 상담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. 단, 센터장은 상담(연구)교수 중 상담센터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로 상담실장을 임명할 수 있다.

3. 전임상담원은 상담 및 임상심리 분야 석사학위와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.

4. 센터의 필요에 따라 센터장의 위촉으로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, 위촉기간은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
5. 행정원은 센터의 전반적인 행정 및 재정업무를 추진한다. (신설: 2021.1.20)

② 상담센터는 본 대학 구성원에게 양질의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자 이외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(개정: 2021.1.20)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상담센터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상담센터장, 부총장, 교무처장, 입학학생처장, 행정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소수의 선임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가. 센터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

나. 규정의 제정,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

다. 심리상담 서비스의 성과분석, 개선방향 및 환류에 관한 사항

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신설: 2021.1.20)

제5조(심리적위기 대응위원회) ① 상담센터는 본교 재학생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리적 위기 대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가. 자신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

나. 자살 등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 또는 그 학생의 학부모가 센터의 전문적인 개입(심리상담, 정신건강의학과 진료, 학부모 고지) 등의 제안을 거절한 경우

다. 기타 심리적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심리적위기 대응위원회는 센터장, 입학학생처장, 지도교수, 상담실장, 학생지원팀 학생관리 담당자 등 개별 사안에 따라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상담센터장이 된다.

④ 심리적위기 대응위원회의 회의는 상담센터에 해당 상담사례가 접수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⑤ 심리적위기 대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가. 자살 및 위기상황의 조사

나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에 대한 조사 및 결정

⑥ 기타 세부사항은 상담센터 운영세칙에 따른다.(신설: 2021.1.20)

제6조(비밀보장 및 상담자 윤리) ① 상담센터는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자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.

② 상담센터는 내담자의 동의 없이 내담자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유출하지 않는다. 단, 법에 의하여 요구 받거나 내담자 또는 타인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긴급한 상황은 예외로 한다.(개정: 2021.1.20)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25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월 2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